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4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10월 13일

나. 제안자: 최동철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10. 24.)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신찬호 의원)

제안이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자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강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살 실태 및 통계, 분석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다.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다. 해당부서: 건강관리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10. 16. ~ 10. 20.)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개정취지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자살예방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생명존중문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6조제3항에서 명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자살 실태 및 통계·분석결과를 매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7조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는데

- 위촉직 위원 중 “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는데, 기존의 심리상담, 상담치료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진료비 등의 지원과 방문상담 시행에 관한 근거도 신설하였고
- 안 제13조2에서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되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제13조의2(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¹⁾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종류와 그 이용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 종합의견

-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만 2,906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으며,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수준²⁾으로 나타나

1) 자조 모임: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인 비전문적 활동을 함으로써 집단 성원 개개인이 도움을 얻는 모임을 말하며, 전문적 관계에서 잘 표출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자조 모임 구성원들은 동료애를 발휘하여 사회적 고립이나 낙인에 의한 은둔을 방지할 수 있고 주거, 보건, 고용 기회 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심리학용어사전)]

2)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을 비교:

한국 22.6명, OECD 평균 자살률은 10.6명

-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자살 예방부터 고위험군 선제 발굴·지원,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고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1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³⁾에 따르면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42.8%(343명)는 생존 당시 자살로 가족, 지인(친구, 직장동료 등)을 잃은 자살 유족으로
 -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83.3%(793명)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60.9%(580명)는 중증도 이상의 우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어
 - 자살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자살유족에 대한 사후관리나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상황임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3)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7년간(2015~2021) 자살사망자 801명의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 상태를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그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살 심리부검, 죽음으로 삶을 이야기하다”]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살고위험군과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여,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및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적 의의가 타당하며, 관계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